

노후생활 활성화 및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협약 기관”)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생활 활성화(사회참여, 건강증진, 소득보장, 근로빈곤층 지원 등) 및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해 결정한다.

① 공동 연구

- 가. 노후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연구의 개발과 수행
- 나. 공동 연구 발굴·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 다. 연구자료, 출판물 및 지식·학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 라. 공동캠페인, 교육, 조사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② 정보(데이터) 공유 및 정보 처리

- 가. 정보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 나. 기관 상호발전을 위한 지식의 공유와 확산
- 다. 노후 생활 활성화 목적의 데이터 및 통계 공유
- 라. 협약기관 간 제공 정보(데이터)의 우선처리 및 확대

③ 인력교류

- 가. 우수 인력의 교류
- 나. 상호 기관 벤치마킹, 제도개선 시 협력
- 다. 파견자에 대한 교육지원, 복무관리 등 제반업무 수행
- 라. 필요 시 실무 회의 개최를 통한 인사교류

④ 협약기관은 본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역할 및 진행) 본 협약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부사항은 기관별 제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제4조 (비밀 유지) 협약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취득한 상대측의 사실, 정보 자료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원칙을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협약기관 간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이후에는 자동 종료된다. 단, 협약 기관 간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부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변경 및 해지)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협약 준수)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3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혜식

정혜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조현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이태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노대명